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곽상언 · 이성운
이기현 · 채현일 · 문진석
정혜경 · 김 윤 · 전종덕
장종태 · 최민희 · 문대림
박지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·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, 경기, 인천, 부산, 대전,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국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

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미
설치된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
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).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전세피해지원센터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(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·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(이하 “전세피해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11조(전세피해지원센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
1. ~ 4. (생략) <신설>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